

인천 검단신도시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AA24블록)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2-562-1990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 민영 | 인천광역시 거주자 |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 비규제지역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10년 | 3년 | 없음 | 적용 | 공공택지, 대규모택지 |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5.07.04.(금) | 25.07.14.(월) | 25.07.15.(화) | 25.07.16.(수) | 25.07.22.(화) | 25.07.25.(금) ~ 25.07.29.(화) | 25.08.04.(월)~ 25.08.07.(목)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가입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을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홀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정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점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eomdan2-sclass.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 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 인증서 | 금융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KB국민 인증서 | 토스 인증서 | 신한 인증서 | 카카오 인증서 |
|---------|-----------|-----------|------------|-------------|-----------|-----------|------------|
| APT | | ○ | | | ○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7.04.(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

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아파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청약 순위별로 공급세대수의 50%를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5.07.14.(월) | 25.07.15.(화) | 25.07.16.(수) | 25.07.22.(화) | 25.07.25.(금) ~ 25.07.29.(화) | 25.08.04.(월)~ 25.08.07.(목) |
|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80-6번지) |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해당청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 10년간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인천광역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임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 인지세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형태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1조 2항 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균등하게 분담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납부세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 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 - 9705호(2025.07.03.)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24BL(불로동)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최저 2층, 지상 최고 25층 12개동 총 1,010세대
[특별공급 491세대(기관추천 70세대, 다자녀가구 100세대, 신혼부부 160세대, 노부모부양자 29세대, 생애최초 13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 주택관리 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 약식 표기 | 세대당 계약면적(㎡) | | | |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 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 |
|------------|----|---------------------|----------|-------------|------------|----------|----------------------------|----------|-------------|------------|----------|-----------|----------|-----------|----------|-----|-----------------|-------------------|
| | | | | 세대별 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 장등) | 계약 면적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 | | | | | | |
| 2025000253 | 01 | 084.9361A | 84A | 84.9361 | 25.5188 | 110.4549 | 60.2622 | 170.7171 | 56.0421 | 521 | 52 | 52 | 119 | 15 | 98 | 336 | 185 | 26 |
| | 02 | 084.9728B | 84B | 84.9728 | 26.7050 | 111.6778 | 60.2883 | 171.9661 | 56.0664 | 180 | 18 | 18 | 41 | 5 | 34 | 116 | 64 | 8 |
| | 03 | 112.8823A | 112A | 112.8823 | 33.3998 | 146.2821 | 80.0901 | 226.3722 | 74.4815 | 74 | - | 7 | - | 2 | - | 9 | 65 | 3 |
| | 04 | 114.3163A | 114A | 114.3163 | 32.4001 | 146.7164 | 81.1075 | 227.8239 | 75.4277 | 235 | - | 23 | - | 7 | - | 30 | 205 | 11 |
| 합 계 | | | | | | | | | 1,010 | 70 | 100 | 160 | 29 | 132 | 491 | 519 | 48 | |

-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람.
[평균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상가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세대수

(단위: 세대)

| 구분(약식표기) | | 84A | 84B | 112A | 114A | 합계 |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 | 인천광역시 | 5 | 2 | - | - | 7 |
| | | 경기도 | 5 | 2 | - | - | 7 |
| | | 서울특별시 | 5 | 2 | - | - | 7 |
| | 국가유공자 | 5 | 2 | - | - | 7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5 | 2 | - | - | 7 | |
| |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 5 | 2 | - | - | 7 | |
| | 중소기업 근로자 | 7 | 2 | - | - | 9 | |
| | 북한이탈주민 | 4 | 2 | - | - | 6 | |
| | 우수선수 | 6 | 1 | - | - | 7 | |
| | 철거주택(이주대책 대상자) | 5 | 1 | - | - | 6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26 | 9 | 4 | 12 | 51 | |
| | 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50%) | 26 | 9 | 3 | 11 | 49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119 | 41 | - | - | 160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15 | 5 | 2 | 7 | 29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98 | 34 | - | - | 132 | |
| 합계 | | 336 | 116 | 9 | 30 | 491 |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 표시 안내

| 공고상 청약시 주택형 | 084.9361A | 084.9728B | 112.8823A | 114.3163A |
|-------------|-----------|-----------|-----------|-----------|
| 약식표기 | 84A | 84B | 112A | 114A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천원)

| 주택형 (약식표기) | 동별 (라인별) | 공급 세대 수 | 층 구분 | 해당 세대 수 | 분양가격 | | | | 계약금 (10%) | 중도금 (60%) | | | | | | 잔금 (30%) |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 1회 (10%) | 2회 (10%) | 3회 (10%) | 4회 (10%) | 5회 (10%) | 6회 (10%) | | |
| | | | | | 계약시 | 2025.11.20 | 2026.04.20 | 2026.09.20 | 2027.03.20 | 2027.08.20 | 2028.01.20 | 입주지정일 | | | | | |
| 84A | 5201동(1,2,3,5호), 5202동(1,2,3,5호), 5203동(5호), 5204동(1,2,5호), 5205동(5호), 5206동(5호), 5207동(5호), 5208동(5호), 5209동(5호), 5210동(5호), 5211동(1,2,3,5호), 5212동(1,2,3,5호) | 521 | 1층 | 11 | 232,128 | 343,872 | - | 576,000 | 57,600 | 57,600 | 57,600 | 57,600 | 57,600 | 57,600 | 57,600 | 172,800 | |
| | | | 2층 | 26 | 232,128 | 353,872 | - | 586,000 | 58,600 | 58,600 | 58,600 | 58,600 | 58,600 | 58,600 | 58,600 | 58,600 | 175,800 |
| | | | 3층 | 26 | 232,128 | 362,872 | - | 595,000 | 59,500 | 59,500 | 59,500 | 59,500 | 59,500 | 59,500 | 59,500 | 59,500 | 178,500 |
| | | | 4층 | 26 | 232,128 | 370,872 | - | 603,000 | 60,300 | 60,300 | 60,300 | 60,300 | 60,300 | 60,300 | 60,300 | 60,300 | 180,900 |
| | | | 5층 | 26 | 232,128 | 377,872 | - | 610,000 | 61,000 | 61,000 | 61,000 | 61,000 | 61,000 | 61,000 | 61,000 | 61,000 | 183,000 |
| | | | 기준층 | 406 | 232,128 | 384,872 | - | 617,000 | 61,700 | 61,700 | 61,700 | 61,700 | 61,700 | 61,700 | 61,700 | 61,700 | 185,100 |
| 84B | 5203동(3호), 5204동(3호), 5205동(3호), 5206동(3호), 5207동(3호), 5208동(3호), 5209동(3호), 5210동(3호) | 180 | 1층 | 6 | 232,229 | 324,771 | - | 557,000 | 55,700 | 55,700 | 55,700 | 55,700 | 55,700 | 55,700 | 55,700 | 167,100 | |
| | | | 2층 | 8 | 232,229 | 334,771 | - | 567,000 | 56,700 | 56,700 | 56,700 | 56,700 | 56,700 | 56,700 | 56,700 | 170,100 | |
| | | | 3층 | 8 | 232,229 | 343,771 | - | 576,000 | 57,600 | 57,600 | 57,600 | 57,600 | 57,600 | 57,600 | 57,600 | 172,800 | |
| | | | 4층 | 8 | 232,229 | 351,771 | - | 584,000 | 58,400 | 58,400 | 58,400 | 58,400 | 58,400 | 58,400 | 58,400 | 175,200 | |
| | | | 5층 | 8 | 232,229 | 358,771 | - | 591,000 | 59,100 | 59,100 | 59,100 | 59,100 | 59,100 | 59,100 | 59,100 | 177,300 | |
| | | | 기준층 | 142 | 232,229 | 366,771 | - | 599,000 | 59,900 | 59,900 | 59,900 | 59,900 | 59,900 | 59,900 | 59,900 | 59,900 | 179,700 |
| 112A | 5203동(1호), 5205동(1호), 5206동(1호) | 74 | 1층 | 2 | 308,505 | 304,086 | 30,409 | 643,000 | 64,300 | 64,300 | 64,300 | 64,300 | 64,300 | 64,300 | 64,300 | 192,900 | |
| | | | 2층 | 3 | 308,505 | 316,813 | 31,682 | 657,000 | 65,700 | 65,700 | 65,700 | 65,700 | 65,700 | 65,700 | 65,700 | 197,100 | |
| | | | 3층 | 3 | 308,505 | 330,450 | 33,045 | 672,000 | 67,200 | 67,200 | 67,200 | 67,200 | 67,200 | 67,200 | 67,200 | 201,600 | |
| | | | 4층 | 3 | 308,505 | 344,086 | 34,409 | 687,000 | 68,700 | 68,700 | 68,700 | 68,700 | 68,700 | 68,700 | 68,700 | 206,100 | |
| | | | 5층 | 3 | 308,505 | 353,177 | 35,318 | 697,000 | 69,700 | 69,700 | 69,700 | 69,700 | 69,700 | 69,700 | 69,700 | 209,100 | |
| | | | 기준층 | 60 | 308,505 | 368,631 | 36,864 | 714,000 | 71,400 | 71,400 | 71,400 | 71,400 | 71,400 | 71,400 | 71,400 | 71,400 | 214,200 |
| 114A | 5203동(2호), 5205동(2호), 5206동(2호), 5207동(1,2호), 5208동(1,2호), 5209동(1,2호), 5210동(1,2호) | 235 | 1층 | 2 | 312,424 | 319,614 | 31,962 | 664,000 | 66,400 | 66,400 | 66,400 | 66,400 | 66,400 | 66,400 | 66,400 | 199,200 | |
| | | | 2층 | 11 | 312,424 | 333,250 | 33,326 | 679,000 | 67,900 | 67,900 | 67,900 | 67,900 | 67,900 | 67,900 | 67,900 | 203,700 | |
| | | | 3층 | 11 | 312,424 | 345,978 | 34,598 | 693,000 | 69,300 | 69,300 | 69,300 | 69,300 | 69,300 | 69,300 | 69,300 | 207,900 | |
| | | | 4층 | 11 | 312,424 | 359,614 | 35,962 | 708,000 | 70,800 | 70,800 | 70,800 | 70,800 | 70,800 | 70,800 | 70,800 | 212,400 | |
| | | | 5층 | 11 | 312,424 | 368,705 | 36,871 | 718,000 | 71,800 | 71,800 | 71,800 | 71,800 | 71,800 | 71,800 | 71,800 | 215,400 | |
| | | | 기준층 | 189 | 312,424 | 383,250 | 38,326 | 734,000 | 73,400 | 73,400 | 73,400 | 73,400 | 73,400 | 73,400 | 73,400 | 73,400 | 220,200 |

■ 공통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는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에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임.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바람.
- 중도금 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 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 불가)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서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함.
- **실제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는 84A, 114A타입의 주택형이 건립되어 있으며, 84B, 112A타입의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건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약 신청 시 공급안내문에 표기된 타입별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 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자리에서 처리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적용횟수 제한 없음 |
| |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 <p>-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p> <p>-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p> <p>-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p>-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공급기준 |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50%;">구분</th> <th style="width:50%;">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 style="text-align:center;">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 구분 | 처리방법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 | | | | | | | | | | | | | | |
| | 구분 | 처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25%; text-align:center;">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 style="width:25%; text-align:center;">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 style="width:50%; text-align:center;">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body> </table>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25%; text-align:center;">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 style="width:25%; text-align:center;">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 style="width:50%; text-align:center;">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 | | | | | | | | | | | | | | | | | |
| 무주택 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 무주택세대주 요건</p> | | | | | | | | | | | | | | | | | | | |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 style="text-align: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25%;">구분</th> <th style="width: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width:25%;">그 밖의 광역시</th> <th style="width: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center;">250만원</td> <td style="text-align:center;">2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center;">600만원</td> <td style="text-align: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center;">3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center;">700만원</td> <td style="text-align:center;">4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모든면적</td> <td style="text-align: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center;">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0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인천광역시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기복무 재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 우수선수 : 대한체육회 선수지도자지원부 ■ 철거주택(이주대책 대상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단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00세대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주택형태 대상 세대수의 5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50% 우선공급에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배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배점항목</th> <th rowspan="2">총배점</th> <th colspan="2">배점기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기준</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00</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 <td rowspan="3">40</td> <td>4명 이상</td> <td>40</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3명</td> <td>35</td> </tr> <tr> <td>2명</td> <td>25</td> </tr> <tr> <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 <td rowspan="3">15</td> <td>3명 이상</td> <td>15</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2명</td> <td>10</td> </tr> <tr> <td>1명</td> <td>5</td> </tr> </tbody> </table> | 배점항목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기준 | 점수 | 계 | 100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4명 이상 | 4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3명 | 35 | 2명 | 25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2명 | 10 | 1명 | 5 |
| 배점항목 | 총배점 | | | 배점기준 | |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 |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4명 이상 | 4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명 |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명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명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명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 | | |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160세대

| 구분 | 내용 | |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내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 | |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2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3단계 | 우선공급 (2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 4단계 | 일반공급 (1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자 50%,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하는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p>■ ②순위</p> <table border="1"> <tr> <th>순위</th> <th>내용</th> </tr> <tr> <td>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2순위</td> <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 </tr> </table> <p>■ ③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자에게 50%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추첨으로 공급함</p> | | | | | | | | | 순위 | 내용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p>■ 자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p>■ 소득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확인 시점 <table border="1"> <tr> <th>입주자모집공고일</th> <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 <th>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 </tr> <tr> <td>2025.07.04.</td> <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 <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 </tr> </table> <p>-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소득구분</th> <th rowspan="2">비율</th> <th colspan="6">소득금액</th> </tr> <tr> <th>3인 이하</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h>7인</th> <th>8인</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td> <td>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td> <td>100% 이하</td> <td>~7,205,312원</td> <td>~8,578,088원</td> <td>~9,031,048원</td> <td>~9,733,086원</td> <td>~10,435,124원</td> <td>~11,137,162원</td> </tr> <tr> <td>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td> <td>100% 초과 120% 이하</td> <td>~8,646,374원</td> <td>~10,293,706원</td> <td>~10,837,258원</td> <td>~11,679,703원</td> <td>~12,522,149원</td> <td>~13,364,594원</td> </tr> <tr> <td rowspan="2">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td> <td>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td> <td>100% 초과 140% 이하</td> <td>7,205,313원~ 10,087,437원</td> <td>8,578,089원~ 12,009,323원</td> <td>9,031,049원~ 12,643,467원</td> <td>9,733,087원~ 13,626,320원</td> <td>10,435,125원~ 14,609,174원</td> <td>11,137,163원~ 15,592,027원</td> </tr> <tr> <td>부부 모두</td> <td>120% 초과</td> <td>8,646,375원~</td> <td>10,293,707원~</td> <td>10,837,259원~</td> <td>11,679,704원~</td> <td>12,522,150원~</td> <td>13,364,595원~</td> </tr> </tbody> </table> | | |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2025.07.04.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205,312원 | ~8,578,088원 | ~9,031,048원 | ~9,733,086원 | ~10,435,124원 | ~11,137,162원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8,646,374원 | ~10,293,706원 | ~10,837,258원 | ~11,679,703원 | ~12,522,149원 | ~13,364,594원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205,313원~ 10,087,437원 | 8,578,089원~ 12,009,323원 | 9,031,049원~ 12,643,467원 | 9,733,087원~ 13,626,320원 | 10,435,125원~ 14,609,174원 | 11,137,163원~ 15,592,027원 | 부부 모두 | 120% 초과 | 8,646,375원~ | 10,293,707원~ | 10,837,259원~ | 11,679,704원~ | 12,522,150원~ | 13,364,595원~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5.07.04.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205,312원 | ~8,578,088원 | ~9,031,048원 | ~9,733,086원 | ~10,435,124원 | ~11,137,162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8,646,374원 | ~10,293,706원 | ~10,837,258원 | ~11,679,703원 | ~12,522,149원 | ~13,364,594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205,313원~ 10,087,437원 | 8,578,089원~ 12,009,323원 | 9,031,049원~ 12,643,467원 | 9,733,087원~ 13,626,320원 | 10,435,125원~ 14,609,174원 | 11,137,163원~ 15,592,027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부 모두 | 120% 초과 | 8,646,375원~ | 10,293,707원~ | 10,837,259원~ | 11,679,704원~ | 12,522,150원~ | 13,364,595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이하 | 11,528,499원 | 13,724,941원 | 14,449,677원 | 15,572,938원 | 16,696,198원 | 17,819,459원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087,438원~ | 12,009,324원~ | 12,643,468원~ | 13,626,321원~ | 14,609,175원~ | 15,592,028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17,819,460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우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 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내용 | |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토지 |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 | | | | | | | | | | | | |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9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내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우주택세대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우주택자이어야 함 <p>■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p>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추첨으로 공급함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 | 1명 | 10 | 5명 | 30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3명 | 20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단계</th> <th style="width: 20%;">소득구분</th> <th style="width: 7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rowspan="2">5단계</td> <td rowspan="2">추첨공급</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추첨으로 공급함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5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인 가구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 | | | | | | | | | | | | | | | | |
| | | 1인 가구 | | | | | | | | | | | | | | | | | | |
| 비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 | | | | | | | | | | | | | | | | | |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7.04.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130% 이하 | ~9,366,906원 | ~11,151,514원 | ~11,740,362원 | ~12,653,012원 | ~13,565,661원 | ~14,478,311원 |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130% 초과 160% 이하 | 9,366,907원~ 11,528,499원 | 11,151,515원~ 13,724,941원 | 11,740,363원~ 14,449,677원 | 12,653,013원~ 15,572,938원 | 13,565,662원~ 16,696,198원 | 14,478,312원~ 17,819,459원 | |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17,819,460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528,499원 11,528,500원~ | ~13,724,941원 13,724,942원~ | ~14,449,677원 14,449,678원~ | ~15,572,938원 15,572,939원~ | ~16,696,198원 16,696,199원~ | ~17,819,459원 17,819,460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 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내용 | |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 | | | | | | | |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353 502 2110 707">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 |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추첨으로 공급함 ■ ②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border="1" data-bbox="353 1037 2145 1173"> <thead> <tr> <th>구분</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40%</td> <td>60%</td> </tr> <tr> <td>전용면적 85㎡ 초과</td> <td>-</td> <td>100%</td> </tr> </tbody> </table>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border="1" data-bbox="353 1220 2161 1500">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6">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body> </table> | | |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40% | 60% | 전용면적 85㎡ 초과 | - | 100%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40%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초과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 0명 | 5 | 4명 | 25 |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 구 분 | 내 용 |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 |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 | | | | | | | | | | | |
|--|---|------------------------------|----|----|-----|-------------|----------|-----|---------------|-----------------------------|-----|---------------|------------------------------|
| <p>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 | | | | | | | | | | | |
|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 | | | | | | | | | | | |
| <p>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 | | | | | | | | | | | |
|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60 1118 611 1161">단계</th> <th data-bbox="611 1118 1093 1161">비율</th> <th data-bbox="1093 1118 2157 1161">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60 1161 611 1204">1단계</td> <td data-bbox="611 1161 1093 1204">추첨제 물량의 75%</td> <td data-bbox="1093 1161 2157 1204">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 data-bbox="360 1204 611 1248">2단계</td> <td data-bbox="611 1204 1093 1248">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 data-bbox="1093 1204 2157 1248">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 data-bbox="360 1248 611 1302">3단계</td> <td data-bbox="611 1248 1093 1302">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 data-bbox="1093 1248 2157 1302">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 | 단계 | 비율 | 내용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단계 | 비율 | 내용 | | | | | | | | | | | |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 | | | | | | | | | |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 | | | | | | | | | |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 | | | | | | | | |
|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 | | | | | | | | | | | | |
| <p>비고</p> | <p>■ 1순위 가정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정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정제 당첨 시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정제 청약이 불가합니다.</p> | | | | | | | | | | | | |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방문 접수: 특별공급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참조)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 필요서류 | | | | |
|---|---|---------|-----------|---|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 공고단지 청약연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달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 | |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청약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7.22.(화) ~ 2025.07.31.(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 문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5.07.22.(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구분 | | 자격서류제출 |
|------|--|--|
| 일시 | | 2025.07.25.(금) ~ 2025.07.29.(화) 5일간 (10:00 ~ 16:00) |
| 장소 | | 당사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80-6번지 |
| 유의사항 |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소유 유무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유무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여부를 확인한 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공통서류 | ○ | | 특별공급신청서, 특별공급 확인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약서 |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특별공급 신청서 : 인터넷 청약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여권정보증명서 ※재외동포: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 | ○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본인 | • 주민등록번호(본인 및 세대원 모두 뒷자리 전부표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하여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 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본인 |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 | | | |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
| |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당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기간 25년이상 명시) |
| | ○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명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정 기준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담당의사명, 의사면허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확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 ○ | 소득증빙서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청자 또는 당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담당의사명, 의사면허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

| | | | | | |
|-------------|--|---|-----------------------------|---------------|---|
| | | ○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를 화면 인쇄)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 | 부동산 건물(주택포함)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이 확인 될 경우 제출 |
| | | ○ | 부동산 가격 증명 서류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제출 ※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공동주택/단독주택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가격 열람 / 단독주택가격 열람 - 기타 건축물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 |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구)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 청약 가정점수 산정기준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세대주의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발행번호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발행번호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
| |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를 화면 인쇄) • 발급 시 (주인)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 부동산 건물(주택포함)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이 확인 될 경우 제출 |
| | ○ | 부동산 가격 증명 서류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제출 ※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 - 토지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공동주택/단독주택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가격 열람 / 단독주택가격 열람 - 기타 건축물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구)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담당의사명, 의사면허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필수)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 | ○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 청약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해당 주택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주택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당첨자 | • 온라인 발급 및 본인발급용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위임장 | 당첨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서류접수 기간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출산휴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또는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① 해당 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또는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② 해당 직장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①,② 해당 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본) | ①,② 해당 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②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
| | 법인대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④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세무서 ② 세무서/등기소 ③ ④ 해당직장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및 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① 행정복지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② “위촉증명서 및 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
| 무직자 |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②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 소득사실 없음) |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 |

-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청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청약신청자 본인)

| 해당어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제출서류 | 발급처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입증 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세무서 - 해당직장 - 건강보험공단 |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 | - 세무서 - 해당직장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함.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증빙 제출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해당자격 | 자산입증 제출서류 | | 발급처 |
|----------------|-----------|---|---------------------------------|
|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주택,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 ①, ②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포함) |
| | 해당자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상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상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 위택스 |
| | 추가 해당자 | •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
|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일반공급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일반공급 | ○ |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여권정보증명서 |
| | ○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 |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혼인관계여부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본인 |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의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본인 및 피부양 직계존비속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복무확인서 및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 본인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기간 25년이상 명시) |
| 가정제 당첨자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비속 |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피부양 직계비속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직계존속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직계비속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정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 ○ | 당첨사실 확인서 |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정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 | | | | |
|---------------------------|---|------------------|-------------|---|
|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 | ○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본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 | ○ | 무주택 소명서류 | 해당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자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 서류 |
| | ○ | 당첨사실 소명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발급 및 본인발급용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위임장 | 청약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 | ○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구 분 | 계약 기간 | 계약 장소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5.08.04.(월) ~ 2025.08.07.(목) 4일간, 10:00 ~ 16:00 | 당사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80-6번지 ※ 계약체결은 당첨자 발표 후 별도 공지 예정 |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예비입주자 선정에 따른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추후 통보예정이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보를 받지 못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미 방문 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 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구비서류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본인 계약시 | ○ | | 계약금(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 ○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온라인 발급 및 본인발급용에 한함,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1통 |

| | | | |
|---------------------|---|---|---|
| | ○ | | 수입인지(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 시 구비) |
| | |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 | ○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 제3자 대리계약시 (본인이외) | |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에 한함, 아파트계약 위임용) 및 인감도장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장(또는 대리인 서명)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용 접수불가)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 계약금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됨. 단, 부적격 당첨 소명 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8항에 의거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 할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함.(단, 부적격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① 1순위 당첨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동일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동일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정제 점수(가정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정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당첨자 지위가 우선시 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무효화 된 것으로 봄.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시행사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해야 함.(전매 시 양도인, 양수인이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관여하지 않음) 또한,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시 계약자 성명 및 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 101동 801호 홍길동의 경우 → 홍길동801호)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단, 계약금 입금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환불일까지의 이자는 인정하지 않음)

| 금융기관 | 계좌구분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수협은행 |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 1010-2701-9683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

■ **계약자 대출안내**

-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가 가능함.**
 - 계약체결 후 중도금 대출 약정일 이전에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승인 등)에 이의가 없는 계약자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실 계약자
-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받은 대출이자 대납[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가의 총 60%내에서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해주며, 입주 시 납부된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완납 이후 중도금 1~6회차 60%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기준으로 안내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정부정책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중도금대출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를 통보할 의무가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알선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며 제1금융권 지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니 제2금융권 이용에 따른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미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중도금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 연장의 의무가 없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계약자의 신용 및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대체하여 사업주체의 연대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분양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어 문제가 없는 경우에 대출실행 가능하며, 개인이 대출신청하지 않거나 신용 및 금융기관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실행이 불가한 자는 개인이 중도금 납입일에 맞춰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입금하여야 하며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에 의거한 사전방문(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기간) 및 방법은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이며,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길 것을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에 의해 앞당길 수 있으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제세공과금을 계약자가 부담함.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열쇠불출일로부터)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열쇠불출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인테리어 공사 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관리비예치금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 계약자는 아파트 보존등기 접수일과 분양대금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 및 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취득세 부과·징수기관에서 정한 비율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별도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 기준일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 계약시 | 2025.11.20. | 입주지정일 |
| 84A | 5,900,000 | 590,000 | 590,000 | 4,720,000 |
| 84B | 9,200,000 | 920,000 | 920,000 | 7,360,000 |
| 112A | 10,700,000 | 1,070,000 | 1,070,000 | 8,560,000 |
| 114A | 10,400,000 | 1,040,000 | 1,040,000 | 8,320,000 |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 금융기관 | 계좌구분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수협은행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 중도금, 잔금) | 1010-2701-9721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은 인정하지 않음.
- 발코니 확장 및 옵션금액은 대출할선불가로 각 일정에 맞춰 계좌이체 납부하여야 함.
- 계약 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 제출.[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계약자 성명 및 호수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 계약자 성명 및 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 101동 801호 홍길동의 경우 → 홍길동801호)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단,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설계도서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사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별로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조명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 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 제기불가)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에 따른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이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사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공간은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나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일 경우 외부 창호는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공간은 난방이 되지 않는 외부노출 공간으로 드레인 및 선홍통, 보일러 등 발코니 설치 시설에 동파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 물품의 훼손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 확장형 세대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 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는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증가, 난방부담금 부과, 관리주체와의 협의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시 저층의 경우 외부 석재 마감으로 인해 창호 개구부까지 외부 석재가 시공되오니 추후 외부 창호 설치 시 석재를 정교하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접합부위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확장형과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발코니확장 포함 품목(주방가구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세대는 우물천장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우물천장에 따른 천장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공사비

■ 가구 및 인테리어 유상옵션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선택(위치명칭) | | 품목(규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 | | | | 계약시 | 2025.11.20. | 입주지정일 | |
| 84A | 1. 중문 | | 1. 3연동 메탈도어 | 900,000 | 90,000 | 90,000 | 720,000 | |
| | 2. 신발장특화 | | 1. 조명형 사선선반 2. 신발살균기 3. 일상화공간 하부조명 | 900,000 | 90,000 | 90,000 | 720,000 | |
| | 3. 냉장고장 | | 1. 냉장고장+TL장 | 1,920,000 | 192,000 | 192,000 | 1,536,000 | |
| | 4. 주방 특화 | 알파룸 선택시 | 택1 | 1.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 상판 2. 아일랜드장 | 3,300,000 | 330,000 | 330,000 | 2,640,000 |
| | | | 택2 | 1.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 상판 2. 유리마감 플랩 상부장 3. 사각싱크볼 4. 무광수전 5. 독립형 후드 6. 아일랜드장 7. 벽부형 약세사리 | 4,150,000 | 415,000 | 415,000 | 3,320,000 |
| | | 수납확장형 선택시 | 택3 | 1.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 상판 2. 아일랜드장 3. 유리마감 플랩 상부장 | 6,600,000 | 660,000 | 660,000 | 5,280,000 |

| | | | | | | | |
|---------------------------|----------------------|--|---|-----------|---------|-----------|-----------|
| | | | 4. 사각썬크볼 5. 무광수전 6. 독립형 후드 7. 장식장(조명) 8. 현관팬트리(도어,시스템가구) 9. 알파룸 메탈슬라이딩도어 10. 벽부형 약세사리 | | | | |
| | 5. 주방조명특화 | | 1. 우물천장 시트루버 2. 우물천장 라인등(직,간접) 3. 주방 라인등 | 1,430,000 | 143,000 | 143,000 | 1,144,000 |
| 6. 거실벽 특화 | 택1 (알파룸 선택시) | 1. 벽 시트판넬 2. 복도, 거실 간접등 | 3,220,000 | 322,000 | 322,000 | 2,576,000 | |
| | 택2 (수납확장형 선택시) | 1. 벽 시트판넬 2. 복도, 거실 간접등 | 2,750,000 | 275,000 | 275,000 | 2,200,000 | |
| 7. 드레스룸특화 | | 1. 벽판넬 시스템가구(조명) 2. 불박이장(의류관리기장,내부조명,화장대) 3. 멀티매입조명 4. 3연동 메탈도어 | 6,000,000 | 600,000 | 600,000 | 4,800,000 | |
| 8. 침실2 불박이장 | | 1. 불박이장 | 1,200,000 | 120,000 | 120,000 | 960,000 | |
| 9. 바닥특화 | | 1. 광폭강마루 | 1,000,000 | 100,000 | 100,000 | 800,000 | |
| 10. 조명특화 | | 1. 거실 라인등(직,간접) 2. 거실 원형매입등 3. 거실 메인등 색온도조절 | 1,030,000 | 103,000 | 103,000 | 824,000 | |
| 11. 수전, 약세사리특화 (욕실1,2) | | 1. 고급 무광수전 2. 고급 무광약세사리 | 800,000 | 80,000 | 80,000 | 640,000 | |
| 12. 욕실벽특화(욕실1,2) | | 1. 포세린 벽타일(600X1200) | 730,000 | 73,000 | 73,000 | 584,000 | |
| 13. 위생도기특화(욕실1,2) | | 1. 비데일체형 양변기 2. 페데스탈 일체형 세면대(욕실2) | 780,000 | 78,000 | 78,000 | 624,000 | |
| 84B | 1. 중문 | | 1. 3연동 메탈도어 | 900,000 | 90,000 | 90,000 | 720,000 |
| | 2. 신발장특화 | | 1. 조명형 사선선반 2. 신발살균기 3. 일상화공간 하부조명 | 900,000 | 90,000 | 90,000 | 720,000 |
| | 3. 현관팬트리 | | 1. 시스템가구 | 340,000 | 34,000 | 34,000 | 272,000 |
| | 4. 냉장고장 | | 1. 냉장고장 | 1,260,000 | 126,000 | 126,000 | 1,008,000 |
| | 5. 주방특화 | 택1 | 1.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 상판 | 1,630,000 | 163,000 | 163,000 | 1,304,000 |
| 택2 | | 1.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 상판 2. 유리마감 플랩, 여닫이 상부장 3. 사각썬크볼 | 3,450,000 | 345,000 | 345,000 | 2,760,000 | |

| | | | | | | |
|------|---------------------------|--|--------------------|-----------|---------|-----------|
| | | 4. 무광수전 5. 독립형 후드 6. 미드웨이 선반 7. 라인등 | | | | |
| | 6. 복도팬트리 | 1. 3연동 메탈도어 2. 시스템가구 | 1,300,000 | 130,000 | 130,000 | 1,040,000 |
| | 7. 드레스룸특화 | 1. 벽판넬 시스템가구(조명) 2. 붙박이장(의류관리기장, 조명) 3. 화장대 4. 거실 장식장(조명) 5. 멀티매입조명 6. 3연동 메탈도어 | 7,600,000 | 760,000 | 760,000 | 6,080,000 |
| | 8. 침실2 붙박이장 | 1. 붙박이장 | 1,200,000 | 120,000 | 120,000 | 960,000 |
| | 9. 바닥특화 | 1. 광폭강마루 | 1,000,000 | 100,000 | 100,000 | 800,000 |
| | 10. 거실벽특화 | 1. 벽 시트판넬 2. 복도 간접등 | 2,490,000 | 249,000 | 249,000 | 1,992,000 |
| | 11. 조명특화 | 1. 거실 라인등(직, 간접) 2. 거실 원형매입등 3. 거실 메인등 색온도조절 4. 우물천장 시트루버 5. 다운라이트 3EA | 1,740,000 | 174,000 | 174,000 | 1,392,000 |
| | 12. 수전, 약세사리특화 (욕실1,2) | 1. 고급 무광수전 2. 고급 무광약세사리 | 800,000 | 80,000 | 80,000 | 640,000 |
| | 13. 욕실벽특화(욕실1,2) | 1. 포세린 벽타일(600X1200) | 730,000 | 73,000 | 73,000 | 584,000 |
| | 14. 위생도기특화(욕실1,2) | 1. 비데일체형 양변기 2. 페데스탈 일체형 세면대(욕실2) | 780,000 | 78,000 | 78,000 | 624,000 |
| 112A | 1. 중문 | 1. 3연동 메탈도어 | 930,000 | 93,000 | 93,000 | 744,000 |
| | 2. 신발장특화 | 1. 조명형 사선선반 2. 신발살균기 3. 일상화공간 하부조명 | 1,480,000 | 148,000 | 148,000 | 1,184,000 |
| | 3. 현관팬트리 | 1. 시스템가구 | 340,000 | 34,000 | 34,000 | 272,000 |
| | 4. 냉장고장 | 1. 냉장고장 | 1,260,000 | 126,000 | 126,000 | 1,008,000 |
| | 5. 주방특화 | 택1 | 1.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 상판 | 1,720,000 | 172,000 | 172,000 |
| 택2 | | 1.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 상판 2. 유리마감 플랩, 여닫이 상부장 3. 사각싱크볼 4. 무광수전 5. 독립형 후드 6. 미드웨이 선반 | 3,180,000 | 318,000 | 318,000 | 2,544,000 |

| | | | | | | | |
|---------|---------------------------|--|--|-----------|---------|-----------|-----------|
| | 6. 주방조명특화 | 1. 우물천장 시트루버 2. 우물천장 라인등(직,간접) 3. 주방 라인등 | 1,480,000 | 148,000 | 148,000 | 1,184,000 | |
| | 7. 복도팬트리 | 1. 3연동 메탈도어 2. 시스템가구 | 1,300,000 | 130,000 | 130,000 | 1,040,000 | |
| | 8. 드레스룸특화 | 1. 벽판넬 시스템가구(조명) 2. 불박이장(의류관리기장,조명) 3. 화장대 4. 멀티매입조명, 원형매입조명 5. 3연동 메탈도어 | 8,520,000 | 852,000 | 852,000 | 6,816,000 | |
| | 9. 침실2 드레스룸 | 1. 가구도어 2. 시스템가구 | 900,000 | 90,000 | 90,000 | 720,000 | |
| | 10. 침실3 불박이장 | 1. 불박이장 | 1,200,000 | 120,000 | 120,000 | 960,000 | |
| | 11. 바닥특화 | 1. 광폭강마루 | 1,300,000 | 130,000 | 130,000 | 1,040,000 | |
| | 12. 거실벽 특화 | 1. 벽 시트판넬 2. 복도 간접등 3. 복도 장식장(조명) | 4,380,000 | 438,000 | 438,000 | 3,504,000 | |
| | 13. 조명특화 | 1. 거실 라인등(직,간접) 2. 거실 원형매입등 3. 거실 메인등 색온도조절 | 1,580,000 | 158,000 | 158,000 | 1,264,000 | |
| | 14. 수전, 악세사리특화 (욕실1,2) | 1. 고급 무광수전 2. 고급 무광악세사리 | 800,000 | 80,000 | 80,000 | 640,000 | |
| | 15. 욕실벽특화(욕실1,2) | 1. 포세린 벽타일(600X1200) | 690,000 | 69,000 | 69,000 | 552,000 | |
| | 16. 위생도기특화(욕실1,2) | 1. 비데일체형 양변기 | 730,000 | 73,000 | 73,000 | 584,000 | |
| | 114A | 1. 중문 | 1. 3연동 메탈도어 | 900,000 | 90,000 | 90,000 | 720,000 |
| | | 2. 신발장특화 | 1. 조명형 사선선반 2. 신발살균기 3. 일상화공간 하부조명 | 1,000,000 | 100,000 | 100,000 | 800,000 |
| | | 3. 현관팬트리 | 1. 시스템가구 | 340,000 | 34,000 | 34,000 | 272,000 |
| | | 4. 복도팬트리 | 1. 가구도어 2. 시스템가구 | 780,000 | 78,000 | 78,000 | 624,000 |
| | | 5. 냉장고장 | 1. 냉장고장+TL장 | 2,230,000 | 223,000 | 223,000 | 1,784,000 |
| 6. 주방특화 | | 택1 | 1.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 상판 | 2,000,000 | 200,000 | 200,000 | 1,600,000 |
| | 택2 | 1.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 상판 2. 유리마감 플랩, 여닫이 상부장 3. 사각씽크볼 4. 무광수전 5. 독립형 후드 | 3,380,000 | 338,000 | 338,000 | 2,704,000 | |

| | | | | | | |
|---------------------------|--|---|-----------|---------|---------|-----------|
| | | 6. 벽부형 악세사리 | | | | |
| 7. 주방조명특화 | | 1. 우물천장 시트루버 2. 우물천장 라인등(직,간접) 3. 주방 라인등 | 1,610,000 | 161,000 | 161,000 | 1,288,000 |
| 8. 거실벽특화 | | 1. 벽 시트판넬 2. 복도, 거실 간접등 | 3,210,000 | 321,000 | 321,000 | 2,568,000 |
| 9. 드레스룸특화 | | 1. 벽판넬 시스템가구(조명) 2. 붙박이장(의류관리기장,조명) 3. 화장대, 키큰장 4. 멀티매입조명, 원형매입조명 5. 3연동 메탈도어 | 5,660,000 | 566,000 | 566,000 | 4,528,000 |
| 10. 침실2,3 붙박이장 | | 1. 붙박이장 | 2,620,000 | 262,000 | 262,000 | 2,096,000 |
| 11. 바닥특화 | | 1. 광폭강마루 | 1,300,000 | 130,000 | 130,000 | 1,040,000 |
| 12. 조명특화 | | 1. 거실 라인등(직,간접) 2. 거실 원형매입등 3. 거실 메인등 색온도조절 | 1,540,000 | 154,000 | 154,000 | 1,232,000 |
| 13. 수전, 악세사리특화 (욕실1,2) | | 1. 고급 무광수전 2. 고급 무광악세사리 | 800,000 | 80,000 | 80,000 | 640,000 |
| 14. 욕실벽특화(욕실1,2) | | 1. 포세린 벽타일(600X1200) | 730,000 | 73,000 | 73,000 | 584,000 |
| 15. 위생도기특화(욕실1,2) | | 1. 비데일체형 양변기 | 730,000 | 73,000 | 73,000 | 584,000 |

■ 유의사항

- 가구 및 슬라이딩도어 형태 및 표면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 하드웨어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보이지 않는 가구배면마감(천장, 벽, 바닥) 별도의 마감처리가 되지 않음.
- 가구 및 인테리어 유상 옵션 공급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음.
- 옵션품목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마감재 특성상 마감재 접합부분의 단차가 다를 수 있음.
-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 갯수 등), 조명유무 및 형태,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
- 설치되는 가구는 중흥 OEM 가구로 설치예정임.
-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마루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옵션 선택으로 제공되는 엔지니어드스톤은 본 공사 시공 시 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 연결부위에 조인이 발생되며 견본주택과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본 공사 시 자재 품질, 품귀, 단종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현관중문 선택 여부에 따라 신발장 및 현관의 크기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현관중문, 드레스룸, 팬트리 등 메탈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지 않으며, 공간분리 목적에 한하니 참조바람.
- 현관중문 선택여부에 따라 복도와 연결되는 현관 출입구의 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람.
- 벽특화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에 의한 거실, 복도 폭이 달라질 수 있음.
- 벽특화 옵션 벽판넬은 타 옵션(팬트리, 가구) 선택유무에 따라 마감상 마감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며 미선택시 거실 벽지로 시공됨.
- 벽특화 옵션 벽판넬은 본공사시 시공성 등을 반영하여 줄눈 유무,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주방우물천장의 크기 및 단천장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방특화 옵션 미선택시 주방 상판은 MMA 일반급, 주방벽체는 타일로 시공 예정임.
- 주방특화옵션 미선택시 장의 마감 및 형태, 몰딩, 조명, 하드웨어, 악세사리, 수전, 싱크볼 등의 구성이 변경되므로 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아일랜드장의 콘센트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콘센트 본체 및 전선이 하부장에 노출되어 하부장 수납공간이 간섭될 수 있음.
- 조명특화 선택시 거실 2방향 라인등의 직접조명 조명만 색온도 조절 기능이 제공됨.

- 조명은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형태 및 설치 위치, 스위치의 구성, 공간별 조도가 달라질 수 있음.
- 가구에 설치된 조명의 경우 안정기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점검구 설치로 사용공간을 줄어 들 수 있으며 하자보수기간 이후 유지보수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니 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의류관리기 배치 공간은 제조사별 제품의 크기에 따라 배치가 불가할 수 있음.
- 드레스룸 벽판넬 조명선반은 전기배선이 되어있어 위치를 이동할 수 없음.
- 드레스룸 특화 미선택시 벽은 안방벽지로 마감됨.
-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는 전사용품으로 냉장고장 옵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냉장고장은 제품에 따라 돌출 및 냉장고+김치냉장고 형태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의 위치 및 형태,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
- 상기 옵션표상 각 실의 명칭은 설계변경 등으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음.
- 강화마루 크기는 추후 입찰결과에 따라 업체별 설비의 차이로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가구 및 인테리어 유상옵션 시공이 불가함으로 가구 및 인테리어 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84A타입 주방특화(수납확장형) 미선택시 알파룸 구획이 변경되며 메탈슬라이딩도어는 변경된 위치에 목창호로 설치됨.
- 84A타입은 주방특화옵션(수납확장형) 선택에 의해 알파룸 형태가 변경되며 실 변동에 따라 조명, 배선기구, 온도조절기, 마감구획, 난방구획 등 변동이 생기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연관옵션 선택시 반드시 수납확장형으로 선택하여야 함.(알파룸 타입만 개별 온도조절제공)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실구성이 변경되는 세대는 난방배관 및 온도조절 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금액은 벽지, MMA상판 등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음.
- 가구 및 인테리어 유상옵션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가구 및 인테리어 유상옵션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단,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합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콘센트가 변경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품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하는 콘센트의 전기 용량이 부족 할 수 있음.

■ 가전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품목 | 설치모델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 | | 계약시 | 2025.11.20. | 입주지정일 |
| 전 주택형 | 전기쿡탑 | ERH-3903 (NAVIEN MAGIC) 2구 인덕션+1구 하이라이트 | 520,000 | 52,000 | 52,000 | 416,000 |
| | | ERI-5553 (NAVIEN MAGIC) 3구 인덕션 | 600,000 | 60,000 | 60,000 | 480,000 |
| | 전기오븐 | NQ36A6555CK (삼성) | 350,000 | 35,000 | 35,000 | 280,000 |
| | | MZ385EBTA (LG) | 410,000 | 41,000 | 41,000 | 328,000 |
| | 식기세척기 | DW80F71Y1SEW (삼성) | 1,070,000 | 107,000 | 107,000 | 856,000 |
| | | DIE6PT (LG) | 1,670,000 | 167,000 | 167,000 | 1,336,000 |
| | 의류관리기 | DF24CB9900CR (삼성) | 1,940,000 | 194,000 | 194,000 | 1,552,000 |
| | | SC5MBR53 (LG) | 2,040,000 | 204,000 | 204,000 | 1,632,000 |

■ 유의사항

- 전기쿡탑 미선택시 3구 가스쿡탑이 설치될 예정임.
-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미선택시 가구장으로 시공됨.
- 식기세척기 하부에 가구걸레받이로 마감되며 제품에 따라 가구와 높이차이로 인해 가구선과 식기세척기 하부선에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람.
- 가전 옵션 공급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음.
- 가전옵션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가전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제품의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의류관리기는 최초 지정된 위치에 시공되며, 도어의 열림 방향이 고정되어 있어 배치에 따라 열림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다른 타입(미러세대, 미컨립세대)의 경우 열림 방향이 상이하게 배치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람.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가전옵션 시공이 불가함으로 가전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금액은 가스쿡탑, 가구 등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음.
- 가전옵션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가전옵션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단,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합니다.)

- 옵션으로 제공되는 쿡탑 모델 이외에, 고객이 별도 구매하는 전기용량 3.3kW 초과 전기쿡탑, 전기레인지어를 설치할 경우 입주자 별도 전기공사 필요할 수 있음.
- 전기쿡탑 선택시 주방 가스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 계량기까지만 가스배관 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제조사: LG)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옵션 선택 | 에어컨 설치 적용실(실내기) | 일반형 | | | | 고급형 | | | |
|------|----------|--------------------------------------|----------------|----------|-------------|-----------|----------------|-----------|-------------|-----------|
| | | |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 | 계약시 | 2025.11.20. | 입주지정일 | | 계약시 | 2025.11.20. | 입주지정일 |
| 84A | 1 | 3실(거실, 주방, 침실1) | 4,800,000 | 480,000 | 480,000 | 3,840,000 | 5,700,000 | 570,000 | 570,000 | 4,560,000 |
| | 2 | 5실(거실, 주방, 침실1,2,3) | 7,400,000 | 740,000 | 740,000 | 5,920,000 | 8,700,000 | 870,000 | 870,000 | 6,960,000 |
| | 3 | 6실(거실, 주방, 침실1,2,3,알파룸) / 알파룸 선택시 | 8,200,000 | 820,000 | 820,000 | 6,560,000 | 10,000,000 | 1,000,000 | 1,000,000 | 8,000,000 |
| 84B | 1 | 3실(거실, 주방, 침실1) | 4,800,000 | 480,000 | 480,000 | 3,840,000 | 5,700,000 | 570,000 | 570,000 | 4,560,000 |
| | 2 | 5실(거실, 주방, 침실1,2,3) | 7,400,000 | 740,000 | 740,000 | 5,920,000 | 8,700,000 | 870,000 | 870,000 | 6,960,000 |
| 112A | 1 | 3실(거실, 주방, 침실1) | 5,000,000 | 500,000 | 500,000 | 4,000,000 | 6,000,000 | 600,000 | 600,000 | 4,800,000 |
| | 2 | 5실(거실, 주방, 침실1,2,3) | 7,600,000 | 760,000 | 760,000 | 6,080,000 | 9,000,000 | 900,000 | 900,000 | 7,200,000 |
| | 3 | 6실(거실, 주방, 침실1,2,3,알파룸) | 8,500,000 | 850,000 | 850,000 | 6,800,000 | 11,000,000 | 1,100,000 | 1,100,000 | 8,800,000 |
| 114A | 1 | 3실(거실, 주방, 침실1) | 5,000,000 | 500,000 | 500,000 | 4,000,000 | 6,000,000 | 600,000 | 600,000 | 4,800,000 |
| | 2 | 5실(거실, 주방, 침실1,2,3) | 7,600,000 | 760,000 | 760,000 | 6,080,000 | 9,000,000 | 900,000 | 900,000 | 7,200,000 |
| | 3 | 6실(거실, 주방, 침실1,2,3,알파룸) | 8,500,000 | 850,000 | 850,000 | 6,800,000 | 11,000,000 | 1,100,000 | 1,100,000 | 8,800,000 |

■ 유의사항

-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본 냉매배관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시스템에어컨 모델은 단지 스마트홈 IOT와 호환이 되지 않으니 계약 전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우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됨.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안방에 기본 설치되는 냉매배관은 설치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의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기관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옵션표상 각 실의 명칭은 설계변경 등으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불가함으로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는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단,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동 시 발생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천장 내부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각종 배관, 소방시설)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가 천장형 공기청정 시스템 선택 유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됨.

■ 천장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옵션선택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옵션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 | | | 계약시 | 2025.11.20. | 입주지정일 |
| 전주택형 | 1안 | 거실,침실1 | 2EA | 2,200,000 | 220,000 | 220,000 | 1,760,000 |
| | 2안 | 거실,침실1,2,3 | 4EA | 4,400,000 | 440,000 | 440,000 | 3,520,000 |
| | 3안(84A 수납확장형 및 84B 선택불가) | 거실,침실1,2,3,알파룸 | 5EA | 5,500,000 | 550,000 | 550,000 | 4,400,000 |

■ 유의사항

- 시스클라인은 선택하신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능력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옵션 공급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기준에 부합된 제품이나, 동작에 따른 개인별 소음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클라인 제품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디퓨저,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기구의 위치 및 설치개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클라인 제품은 천장 빌트인 형태로 천장 내부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클라인 설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여야 함. (실별 명칭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옵션표상 각 실의 명칭은 설계변경 등으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천장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설치가 불가함으로 천장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을 선택할 수 없음.
- 천장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옵션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천장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단,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합니다.)
- 상기 금액은 디퓨저 등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음.

■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옵션(제조사: LG)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품목 | 옵션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 | 계약시 | 2025.11.20. | 입주지정일 |
| 84A, 84B |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 1,700,000 | 170,000 | 170,000 | 1,360,000 |
| 112A, 114A | | 1,800,000 | 180,000 | 180,000 | 1,440,000 |

■ 유의사항

- LG프리미엄환기(전열교환기) 선택시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은 시공되지 않으며,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의 비용은 상기 추가선택품목 판매가 산정 시 감액되어 정산된 금액임.
- LG프리미엄환기(전열교환기)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전열교환기가 설치됨.
- LG프리미엄환기(전열교환기) 장치는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LG프리미엄환기(전열교환기) 설치 위치는 타입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 LG프리미엄환기(전열교환기) 소모성 필터는 사용시점 기준으로 연 1회이상 교체를 권장해드리며 각 필터(프리필터, 집진필터 등)는 사용 환경에 따라 교체 및 세척 주기는 상이할 수 있음. 또한 소모성 필터의 경우 계약자가 직접 교체하여야 함.
- LG프리미엄환기(전열교환기) 작동을 위한 통합 컨트롤러는 주방에 노출시공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을 할 수 없음.
- LG프리미엄환기(전열교환기)는 LG시스템에어컨과 별도의 연동을 통한 공기청정 기능을 제공하지 않음.
- LG프리미엄환기(전열교환기) 옵션 계약 기간 이후 추가 및 취소 불가함.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 금융기관 | 계좌구분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수협은행 | 유상옵션공사 (계약금, 중도금, 잔금) | 1010-2701-9721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

※ 분양대금 계좌와 다름에 유의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및 옵션금액은 대출알선불가로 각 일정에 맞춰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함.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임.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 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 품 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
|---------|---|---|
| 1) 바닥재 | 마루, 현관바닥 타일, 현관 디딤판 및 굽도리(인조석),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욕실/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대피실 타일(타일 붙임 몰탈 포함) | 수공간 바닥 방수 및 배수 슬리브 바닥난방, 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 2) 벽 | 벽지(초배포함) 및 벽체마감 일체, 아트월, 주방 벽 타일/인조석(타일 붙임 몰탈 포함),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 도장, 걸레받이 | 경량벽체, 콘크리트면처리(해당부위) |
| 3) 천장 | 천장지,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대피실 도장, 천장/우물천장 몰딩 및 마감재 | 천장틀위 석고보드, 콘크리트면처리(해당부위) |
| 4) 일반가구 | 현관 신발장 및 팬트리문(해당 타입), 화장대(상판인조석 포함), 복도장/선반, 수납선반 및 악세서리 일체 | 미설치 |
| 5) 주방 | 주방/식당 및 다용도실 가구 일체(상판, 싱크볼 및 악세서리 일체, 선반), 벽타일/인조석, 주방 가전류(가스쿡탑, 렌지후드), 수전류, 절수페달, 주방TV | 소방관련시설, 주방배기 덕트, 설비배관(급,배수,난방), 정보통신배관, 배선 및 배선기구 |
| 6) 욕실 | 콘센트, 위생기구(양변기, 욕조, 세면대), 수전류, 액세서리류, 욕실 환풍기, 벽/바닥 타일, 천장재, 인조석, 재료분리대, 욕실장, 샤워부스, 욕조하부틀, 코킹 | 방수 및 조적위 바탕처리,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배관 배선) |
| 7) 창호 | 목창호 문틀/문짝/문선/손잡이 및 경첩(하드웨어 일체) | 플라스틱창호 내창,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다용도실 도어, 실외기실 도어/루버 |
| 8) 조명기구 | 매립 및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 배관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월패드 |
| 9) 옵션품목 | 선택하는 옵션품목 일체 포함 | 미설치 |
| 10) 기타 | 수전류(세탁수전, 발코니수전 등) | 미설치 |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은 기본형(비확장형) 기준이며, 상기 품목들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원, m²)

| 구분 (주거전용면적) | 84A | 84B | 112A | 114A |
|------------------|------------|------------|------------|------------|
|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금액) | 35,417,000 | 35,849,000 | 47,659,000 | 47,801,000 |

※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확장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자재수급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의거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된 시설은 적절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함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중도금 대출 알선이 불가 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 알선이 불가능 할 시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 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에 맞추어 납부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기본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의 명칭은 “경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였으니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무상귀속(기부채납),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람.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인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실 대지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등에 따라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등·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 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금융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도면, 견본주택, 홍보물 등에 표현된 각 실의 명칭은 설계변경 등으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음. | | | | | | | | | | | | |
|---------------|---|------------------|----------------|------------------|----------------|-----|-----|---------|--------------|--------------|-----------|---------|----------|
| <p>학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당 관청 및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임.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관청 및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당 관청 및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나 초등 돌봄수요가 없는 등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해당 관청 및 지자체에서 판단 시,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임. <p><초등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은 가장 간단7초(2028. 9월 개교 추진 예정)에 배치 할 예정으로 본 단지의 준공 및 입주 시 학교설립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치 대상 학교는 변경될 수 있음. <p><중·고등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학교군 내 배치할 예정임. • 중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교군 내 모든 중학교에 대하여 선복수 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배정됨에 따라 인근 중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음. <p><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결과 및 학생배치계획,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설립 지연 시 입주시기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설학교 설립계획 변경 시, 당해지구 내 학교 부지가 취소 및 위치·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 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시 주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생 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및 개발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와 학교설립여부는 변경될 수 있음. | | | | | | | | | | | | |
| <p>기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과 용적률, 건폐율은 아래와 같음. (아래 사항은 추후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table border="1" data-bbox="360 1114 2152 1209"> <thead> <tr> <th>구분</th> <th>전체면적</th> <th>공동주택면적 (대지지분)</th> <th>상가면적 (대지지분)</th> <th>건폐율</th> <th>용적률</th> </tr> </thead> <tbody> <tr> <td>대지면적(㎡)</td> <td>62,718.5000㎡</td> <td>62,527.0790㎡</td> <td>191.4210㎡</td> <td>14.39 %</td> <td>196.97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면적(대지지분)에서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또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단지 진출입부에 가감속 차로 신설로 발생하는 무상귀속 등으로 공동주택면적(대지지분)이 변동될 경우 세대별 대지지분의 감소가 발생 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구분 | 전체면적 | 공동주택면적 (대지지분) | 상가면적 (대지지분) | 건폐율 | 용적률 | 대지면적(㎡) | 62,718.5000㎡ | 62,527.0790㎡ | 191.4210㎡ | 14.39 % | 196.97 % |
| 구분 | 전체면적 | 공동주택면적 (대지지분) | 상가면적 (대지지분) | 건폐율 | 용적률 | | | | | | | | |
| 대지면적(㎡) | 62,718.5000㎡ | 62,527.0790㎡ | 191.4210㎡ | 14.39 % | 196.97 % | | | | | | | | |
| <p>IOT 관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단지의 스마트홈 IOT서비스는 코콤에 의해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신청 입주인에 한하여 월과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상태조회, 무인택배조회 및 세대내 거실조명, 난방, 가스차단제어 등이 가능하며, 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가스밸브제어, 난방제어등)와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별도 앱으로 연동하여야 함.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스마트홈 IOT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스마트홈 IOT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각 스마트홈 | | | | | | | | | | | | |

- IOT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모델하우스와 영상의 IOT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유상옵션선택으로 선택 할 수 있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단지 스마트홈 IOT와 호환이 되지 않음.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 구분 | 내용 |
|-----------------------|---|
| <p>단지</p> <p>단지계획</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가 위치한 인천 검단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인천 검단지구의 건설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타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등이 발생 할 수 있고, 공사차량 등의 통행으로 교통정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미인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종교용지, 단독주택용지, 주차장용지, 근린생활용지, 학교용지, 유통시설용지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도로, 하수, 가스, 근린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해당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주택건설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입주예정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및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체·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음. • 본 단지 남측으로 20m도로, 서측으로 20m도로, 북측으로 23m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차량에 의한 소음, 먼지,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남서측, 북서측으로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차량에 의한 소음, 먼지, 눈부심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입주 후 비행기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의 피해와 관련한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5203동 북측에 버스정류장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버스의 출발 및 정차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버스정류장의 위치는 차후 이동 될 수 있음) • 본 단지 동측으로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공사차량 등의 통행으로 교통정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미인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인천검단지구 조성사업 교통영향 평가에 따라 주출입구 차선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경찰서 협의에 따른 주출입구 신호운영 교차로, 가·감속차로, 보행자의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방호울타리가 설치될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 지침 상 공공보행도로는 단지 내에 조성되며 사업지 경계선에 통행을 위한 출입구와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24시간 개방되며 이를 통한 외부인의 출입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 남쪽과 남동쪽으로 업무시설 및 학교시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공사 및 시설 이용객들에 의한 소음, 먼지, 차량정체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단지 동측으로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지자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경사도 및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따라 경사로, 조경석 및 계단 등이 추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경계에는 경계형 휀스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음. |
| <p>단지내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 옥탑 및 축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 외부의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인천검단경관기본계획 및 해당 관청 및 지자체 심의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추후 도시의 트렌드 변화, 색채의 유형변화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야간 경관조명에 의해 고층세대는 눈부심 및 수면장애 등의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모형 등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함.
- 주동 외부 특화 계획에 따라 세대별로 외부 창호의 크기, 색상 및 모양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함.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쓰레기분리수거,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의 소음 및 악취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난방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되며, 난방은 거실, 침실1에 계약자 본인이 에어컨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냉매배관이 설치됨.
- 전기 및 통신맨홀 등의 인입위치는 KEPCO(구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가스계량기 및 세대 가스배관은 실내에 설치 될 예정이며 원격검침 설치 시, 검침 데이터는 도시가스사에 제공 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아파트 저층부 마감은 층별, 위치별 시공부위에 따라 석재 또는 뿔칠, 수성페인트로 시공되오니 모형 또는 CG등을 확인하시어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단지와 주변도로와의 레벨차가 생길 수 있으며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는 비상차량 및 쓰레기 운반차량, 일부 입주민과 방문자를 위한 출입구로 계획되었음.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경관조명 등 공용시설 조명과 상가조명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음.
- 단지 서측 부출입구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입점할 점포 종류에 따라 소음 및 먼지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주출입구, 부출입구는 단지 내로 들어갈 수 있는 비상차로 출입구 및 도로가 설치되며,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는 각 동 및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보관소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차량 이동 통선으로 이용되며 이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층 세대의 경우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들에 의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내 부대시설물(재활용 폐기물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DA, 자전거 보관소, 탐라이트, 어린이놀이터)등은 디자인 및 재질, 구조, 크기,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D.A가 설치되는 인근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방법상 취약 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부대시설(공용홀 포함)의 마감 및 시설의 경우 견본주택과 홍보자료는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이며, 실제 설치되는 수량과 사양 및 기자재의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및 추가요구를 할 수 없음.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시설 이용객들에 의하여 소음 및 먼지,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모형 및 공급단지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정형 블록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서비스도로 및 보도 등의 경사도는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의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함.
- 주거동 옥상은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건축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 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주변 인접대지와 레벨차이가 있는 부분은 추후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문주 및 주차장 진입 상부 구조물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색상 및 패턴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로 연결되는 보행자 출입로 및 1층 아파트 현관은 주변 대지 여건 및 디자인 특화에 따라 형상 및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옥상 구조물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최상층의 옥상 등은 개별 사적 소유물이 아니므로 1층의 녹지공간과 같이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하고, 공공의 목적에 반해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형할 경우 변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
- 커뮤니티 시설은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지상1층 제연팬룸의 환기를 위한 설비 및 환기구가 각동에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함으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함.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음. • 공청안테나 및 위성안테나 같은 통신 설비는 5203동 옥상 및 옥탑에 설치 될 예정이며, 차후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 하여야 함. (통신설비의 설치 위치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위치 변경 및 설치개소가 변경 될 수 있음) • 이동통신중계장치 설비는 지하주차장 또는 지하1층의 5201동, 5211동, 5205, 5207동, 5208, 5209동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동통신설비 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5201동, 5205동, 5207동, 5209동, 5210동 지붕층 및 지하1층廻廊에 설치 될 예정이므로, 차후 소음 및 진동 또는 전파의 교란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단, 향후 본공사 진행시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위치 변경 및 설치 개소가 증감될 수 있음) • 이동통신 중계장치 설비, 공청안테나 및 위성안테나 설치 위치 등은 차후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 외벽부 및 옥탑층에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다양한 평면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주거용 옥상은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건축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5201~5202동 서측에 길이 약120m, 높이 약4.4m, 5202~5204동 북측에 길이 약162m, 높이 약9.2m, 5205동과 5206동 북측에 길이 약77m, 높이 약4.3m, 5206~5207동 동측에 길이 약99m, 높이 약2.82m, 5210동 남측에 길이 약70m, 높이 약4.0m의 옹벽이 계획되었으나 추후 인허가 변경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5206, 5207동 동측에 높이 약2.82m 옹벽 및 단지동측 근린공원에 약 3.88m 옹벽으로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에 간섭이 생길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 후 계약하여야 함. • 5203동 남동측으로 단지 높이차로 인해 높이 약10m 이상의 옹벽이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에 간섭이 생길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 후 계약하여야 함.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근린공원,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행자도로와 연계된 대지내 전면보도는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일체 할 수 없고,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하여야 함. • 단지 주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5205동, 단지 부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5201동은 단지 진출입 및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는 공동주택 입주자, 방문자 및 근린생활시설 입주자, 이용자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차량 정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 임의로 통제 및 점유, 소유권 주장 등을 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1층 및 지하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환기 및 채광에 불리 할 수 있고,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다목적체육관,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카페등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드라폰(통학차량 정차공간) 근처에 맘스테이션을 설치 예정이며 차량에 의한 소음 및 교통정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설치 위치 인근 세대는 시설 이용객에 의한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보행자 출입구의 형태 및 구조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 결과, 조경 시설물변경에 따른 선형이나 포장 및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함. • 교통영향평가 변경에 따른 주출입구 차선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주거용 1층이 필로티로 구성된 동은 입구 상부에 보행자 안전시설인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2층 세대는 빗물에 의한 소음, 시야간섭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태양광 집광판은 전동 옥상에 분산 설치될 예정임.(태양광 집광판 설치시 동배치, 방위각, 일조량, 그늘, 여부에 따라 효율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는 변경 혹은 증가 될 수 있음) • 5211동과 5212동 부근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며, 5212동 인근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의 주차는 단지 부출입구의 입주인 주차 동선과 중복되어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자로 인해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불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3개소(5201동과 5202동 2개소, 5203~5210동 각 동 인근에 동마다 1개소, 5211동과 5212동 2개소로 총12개소/서측 근린생활시설 인근 1개소)가 설치될 예정임.(설치장소 및 크기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소는 완속 149개소(이동형 콘센트형 125개소 포함), 급속 6개소 설치될 예정임. |
| 동별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11동, 5212동 인근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시설 이용에 따라 일부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악취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지하1,2층 5203동, 5209동 인근에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우수저장조, 저수조, 5202동, 5206동, 5210동, 5211동 하부에 우수저장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인근 저층부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 악취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지하2층 5211동 인접하여 근린생활시설 재활용폐기물보관시설이 있으며 악취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5209동 지하2층, 5210 지하1,2층, 5212동 지하1,2층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에 따라 일부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

| | | |
|------------|----------|--|
| | | <p>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동 인근으로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 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 의하여 주변 세대는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각동 인근에 D.A가 인접하여 있어 소음 및 먼지,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차후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의 레벨차이를 연결해주는 엘리베이터/계단실, 외부계단이 5201동, 5202동, 5204동, 5205동, 5210동, 5211동 인근에 설치 될 예정이며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배치도 등을 통해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5201동, 5202동, 5203동, 5205동, 5206동, 5207동, 5208동, 5209동, 5210동, 5211동, 5212동 인근에 탐라이트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장소 및 크기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5203동, 5206동, 5210동에 제연팬룸D.A가 5203동, 5210동, 5211동, 5212동은 D.A가 붙어 있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배치도 등을 통해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5211동 지하2층에 재활용 창고와 지하1층 공용창고, 5206동 지하1,2층에 창고가 있어 지하주차장 이용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사용방식에 따라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창고는 공간만 제공하며 추후 입주자 협의를 통해 사용방식은 협의하여야 함) |
| |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위치한 주차장 출입구는 지하2층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부출입구는 공동주택 입주인, 방문자 및 근린생활시설 입주자, 이용자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입주인 임의로 통제 및 점유, 소유권 주장 등을 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총 지하 2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동 지하 1,2층과 연결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 통로구간은 지하2층 유효층고 2,700mm, 지하1층 유효층고 2,300mm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구조설계 및 설비계획에 따라 일부 구간은 낮아질 수 있으며 낮아진 구간은 별도의 층고 안내를 할 예정임. • 지하2층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출입구 높이는 약 2,700mm으로 택배차 진입은 가능하며, 지하주차장 내 일부 구간에서 설비 및 전기배관 등의 이유로 통행이 제한 될 수 있음. • 주차장은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팬룸(제연팬룸) 및 DA에 의한 소음, 풍압 등에 의하여 불쾌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 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에 고효율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환기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계단은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동선 및 지하층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에 의해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부출입구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있어 쓰레기 수거를 위한 차량이 주기적으로 정차를 할 수 있어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불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인근 통학버스 대기공간이 있음. |
| | 근린 생활 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은 별도 계획되어 있으나 추후 실외기 위치가 변경 될 수도 있으며 인근 세대에서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출입구 및 도로 등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 등의 권리행사는 일체 할 수 없고 별도의 대지구획은 불가함. • 근린생활시설 주차는 부출입구 인근에 별도로 마련되어 근린생활시설 이용함에 업주나 이용자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불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시 근린생활시설의 위치 및 크기 형태 호실 개수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여건에 따라 입면이 변경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은 부출입구에 인근에 별도로 전용 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어 단지 부출입구를 이용함으로써 입주자 임의로 소유권 등을 주장 할 수 없으며 하역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불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에 의하여 단지 내부 및 주변에 교통장애가 발생 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변에 폐기물 보관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인접한 세대는 악취가 발생 할 수 있음. |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Mock up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원상복구)하여 인도함. |

- 본 아파트는 발코니 비확장을 기본으로 공급하며, 발코니 확장형은 별도계약품목(유상옵션)이며 발코니 확장면적은 주택형별로 상이함.
- 본 아파트는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달로그와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됨.
- 본 아파트의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넘침 방지를 위해 바닥 구배시공을 하며, 준공 도면 및 견본주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발생할 수 있음)
- 욕실1(공용욕실)의 세면대 설치공간은 건식으로 시공되며 방수가 되지 않은 공간으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함.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 세대가 기본형(비확장) 세대인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부 창호는 미설치됨.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 및 불박이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마루)가 시공되지 않음.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사 시 가스배관 설치 및 발코니에 드레인과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84A, 84B, 114A 침실2-3 사이 벽체는 골조벽체가 아닌 건식고정 벽체임.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됨.
- 본 공사 시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 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발코니2 또는 실외기실 상부에 위치하며 천장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되거나 천장을 설치할 경우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온수분배기 하부는 별도의 마감되지 않음)
- 세대별 주방발코니에 급수, 급탕 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임.(일부세대의 경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급수, 급탕 분배기 위치 및 제조사 사양 등은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적용되지 않거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 주방상판은 제품 특성상 조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 나뭇 부위가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음.(유상옵션으로 제공되는 주방상판 엷지 마감 디테일상 상판과 상판이 만나는 부분의 틈이 발생 할 수 있음)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타일은 요철로 인해 줄눈마감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주방 기본형과 확장형 레이아웃은 서로 상이하며, 주방 확장시 바뀌는 부분은 견본주택 및 관련 도서를 방문하셔서 확인 바람.
- 기본형 세대의 경우 세대 내 창호 위치 및 크기는 차후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단위세대 창호방향은 차후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가스배관이 주방상부장을 통과해서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 될 수 있음.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음.
- 아파트 바닥 난방코일 및 마루마감재는 현재 가구배치가 되어져 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음.
- 본 공사 시,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세대 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대피공간도어)의 프레임 및 하드웨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소방기본법에 의해 세대에 완강기(2층)가 설치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을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발코니2(세탁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 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탁실,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결로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 및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거실에 면한 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되며, 제품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욕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됨. • 에어컨 실외기 가동 시 실외기실 루버를 반드시 개방하여야 함.(미개방시 화재사고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하부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구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바람. • 본 공사 시 현관, 주방 등 인조강화석 및 인조대리석의 나누기는 시공상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과 줄눈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가구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분전함과 세대통합단자함의 침실1 벽면에 설치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84B타입은 아트월에 TV배치시 TV크기 및 배치에 따라 창문, 커튼, 블라인드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욕실1 건식욕실 공간은 천장에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되며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시공됨. |
| 세대/규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제공/전시 품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 됨. |
| 견본주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의 성능이상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소방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은 확장옵션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유상옵션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확장 및 유상옵션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은 확장옵션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된 세대 환기 장치,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표현된 이미지, 모형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색상 및 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설치 위치 및 개소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커뮤니티 시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마감재 및 집기는 실제 시공 시 수량,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출입문 크기,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다목적 체육시설, 바닥 마감재는 스포츠 매트(렉스코트)로 시공되며, 체육관용 목재 후로링 등의 유사마감재로 설치가 되지 않으니 이점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하여 주시기 바람. • 어린이집은 지상층(레벨+38.9)에 설치되고, 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다목적체육관, 작은도서관, 골프연습장 지하2층에 관리사무소, 주민회의실, 주민카페, 휘트니스, GX은 지하1층에 망스태이션 주출입구, 부출입구 인근에 각각 설치함.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대수

- 법정대수 : 총 1,207대 (공동주택 1,204대, 근린생활시설 3대)
 - 설치대수 : 총 1,521대 (공동주택 1,515대, 근린생활시설 6대)
- ※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 주차장 차로의 폭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6.0M 이상 | 지하2층 2.7M / 지하1층 2.3M | 2.7M 이상 |

- 주차장 차로의 폭 및 높이는 통행 구간별 상이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차로의 폭 및 높이 등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VII)으로 표기

| 구분 등급 | 내진능력(MMI 등급) |
|----------|--------------|
| | VII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실 1개소, 경비실 2개소, 경로당 1개소, 어린이집 1개소, 어린이놀이터 5개소(유아놀이터 포함), 커뮤니티센터 1개소, 골프연습장 1개소, 작은도서관 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주민회의실 1개소, 다목적체육관 1개소, 맘스태이션 2개소 등

1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시 및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표시 등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 의무사항 | 적용 여부 | 내용 |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 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미적용 해당없음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미적용 해당없음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 원)

| 구분 | 감리회사 | 감리금액 | 비고 |
|----|---------------|-----------------|--------------------|
| 건축 |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 ₩ 3,618,832,690 | 부가가치세 포함 / 근생시설 포함 |
| 전기 | (주)세광티이씨 | ₩ 952,158,690 | |
| 소방 | (주)동남엠이씨 | ₩ 903,369,899 | |
| 통신 | (주)엔탐엔지니어링 | ₩ 250,000,000 |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 항목 | 공종 | 금액 | 항목 | 공종 | 금액 | 항목 | 공종 | 금액 | | | |
|-----------|---------------|-----------------|-----------|---------------|---------------|----------------|---------------|-----------------|-----------------|------------|----------------|
| 택지비 | 택지공급가격 | 219,157,389,462 | 공사비 | 건축 | 철근콘크리트 공사 | 85,032,696,000 | 기계 설비 | 위생기구설비공사 | 1,834,685,000 | | |
| | 기간이자 | 11,507,327,692 | | | 용접공사 | - | | 난방설비공사 | 1,251,365,000 | | |
| | 필요적 경비 | 11,423,477,644 | | | 조적공사 | 1,478,166,000 | | 가스설비공사 | 1,474,591,000 | | |
| | 그 밖의 비용 | 16,901,802,382 | | | 미장공사 | 5,333,591,000 | | 자동제어설비공사 | 239,519,000 | | |
| | 계 | 258,989,997,180 | | | 단열공사 | 4,190,678,000 | | 특수설비공사 | 2,735,737,000 | | |
| 공사비 | 토목 | 토공사 | | | 6,811,270,000 | 방수·방습공사 | | 3,489,692,000 | 공사비 | 그밖의 공종 | 공조설비공사 |
| | | 흙막이공사비 | | | - | 목공사 | 5,135,486,000 | 전기설비공사 | | | 15,395,128,000 |
| | | 비탈면보호공사 | | | 86,193,000 | 가구공사 | 9,280,449,000 | 정보통신공사 | | | 11,331,439,000 |
| | | 옹벽공사 | | | - | 금속공사 | 3,870,663,000 | 소방설비공사 | | | 15,473,276,000 |
| | | 석축공사 | | | - | 지붕 및 흥통공사 | 1,219,106,000 | 승강기공사 | | | 2,924,742,000 |
| | | 우수·오수공사 | | 144,323,000 | 창호공사 | 8,320,402,000 | 그밖의 공사비 | 일반관리비 | | | 8,596,264,000 |
| | | 공동구 공사 | | - | 유리공사 | 2,163,914,000 | | 이윤 | 8,361,820,000 | | |
|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 607,361,000 | 타일공사 | 3,047,766,000 | | 계 | 242,539,026,000 | | |
| | | 도로포장공사 | | 1,210,713,000 | 돌공사 | 4,099,245,000 | 간접비 | 설계비 | 1,772,275,339 | | |
| | |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 | 180,404,000 | 도장공사 | 1,432,450,000 | | 감리비 | 5,706,887,879 | | |
| | | 정화조시설공사 | | 88,197,000 | 도배공사 | 1,432,450,000 | | 일반분양시설 경비 | 22,192,460,000 | | |
| | | 조경공사 | | 4,209,434,000 | 수장공사 | 4,586,888,000 | | 분담금 및 부담금 | 5,192,984,000 | | |
| | | 부대시설공사 | | 1,361,050,000 | 주방용구공사 | 700,986,000 | | 보상비 | - | | |
| | | 건축 | | 건축 | 공동가설공사 | 2,270,586,000 | | 그밖의 건축공사 | 1,523,883,000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61,794,472,919 |
| | | | | | 가시설물공사 | 761,941,000 | | 급수설비공사 | 1,849,349,000 | 계 | 96,659,080,137 |
| 지정 및 기초공사 | 3,017,288,000 | | 급탕설비공사 | | 1,463,185,000 | 그 밖의 비용 | | 50,934,896,683 | | | |
| 철골공사 | - | | 오수·배수설비공사 | | 1,512,393,000 | 합계 | | 649,123,000,000 | | | |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 항목 | | 금액 | 항목 | | 금액 | |
|-------------|---------------|----------|---------------|-----------------|----------------|----------------|
| 택지비 가산항목 | 택지비 가산비 계 | | 건축비 가산비 계 | | 50,934,896,683 | |
| | 법정 택지이자 | |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 | | 4,285,553,343 | |
| | 취득세 | 취득세 | 8,766,295,578 | 외관특화 공사비 | | 3,245,337,900 |
| | | 지방교육세 | 876,629,558 | 법정초과 조경시설 | | 1,613,089,947 |
| | 재산세 | 재산세 | 920,461,036 | 전기차 충전시설 | | 229,357,700 |
| | | 교육세 | 184,092,207 | 인텔리전트 설비 | 홈 네트워크 | 11,880,206,700 |
| | | 재산세도시지역분 | 644,322,725 | | 초고속통신 특등급 | 3,586,601,100 |
| | 등기수수료 | 보수료 | 31,327,608 | | 에어컨 냉매배관 | 2,359,732,500 |
| | | 인지세 | 348,932 | | 기계환기 설비 | 5,205,246,300 |
| | 말뚝박기 공사비 | | 8,112,868,409 | 공동주택 성능등급 | | 10,577,185,652 |
| | 암석지반 공사비 | | 1,958,012,65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 4,502,826,789 |
| |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 | 5,352,148,897 |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 | 1,436,418,870 |
| | 지역난방분담금 | | 1,478,772,422 | 보증수수료 | | 2,013,339,882 |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인천 경단신도시 경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AA24블록)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 05612025-101-0002300 호 | ₩ 454,386,100,000 원 |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
|---|
|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훈오도,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자(수분양자)는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설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대금채권 및 임대수입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익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 분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
| 사업주체 | 상 호 | (주)새솔건설 |
|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신안동) |
| | 법인등록번호 | 2001111-0335674 |
| 시공회사 | 상 호 | 중흥도건(주) |
|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신안동) |
| | 법인등록번호 | 205511-0004135 |

■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홈페이지 : <http://www.geomdan2-sclass.com>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80-6번지

■ 분양 문의 : 032-562-199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